학교기업 스탠딩에그커뮤니케이션 (Standing Egg Communication)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과 계명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 라 한다) 학칙에 의하여 설치된 학교기업 스탠딩 에그 커뮤니케이션(Standing Egg Communication)(이하 "스탠딩에그"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및 소재지) ① 스탠딩에그는 우리 대학교의 광고홍보학전공이 보유하고 있는 교육, 연구 콘텐츠를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 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자체 사업을 추진한다.(개정 2017. 4. 3.)

② 스탠딩에그의 소재지는 우리 대학교 성서캠퍼스(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에 둔다.

제3조(사업) 스탠딩에그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
2.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제공: 커뮤니케이션 기본 인쇄물(브로슈어, 전단, 소식지 등), 텔레비전 광고, 케이블 광고, 라디오 광고, 신문광고, 잡지광고, 옥외광고, 온라인(인터넷과 모바일) 광고, 홍보 관련 서비스 및 미디어계획
3. 행사 기획, 진행 및 이벤트 서비스 제공
4. 영업 관련 서비스(국내 및 해외)
5. 디아이디(DID: Digital Information Display) 콘텐츠 운용 및 광고판매 사업 운영
6. 마케팅 조사 대행
7. 마케팅 컨설팅 및 대행
8. 기타 기업 및 개인이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무
9. 기타 스탠딩에그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조 직

제4조(조직 및 기능) 스탠딩에그의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서 본부장과 프로젝트 매니저, 계약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3. 10. 16., 2017. 4. 3.)

제5조(임면) ① 스탠딩에그의 본부장과 프로젝트 매니저는 교원으로 겸보하되,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면한다.(개정 2013. 10. 16., 2017. 4. 3.)

② 계약직원의 임면은 「산학협력단 취업규칙」에 따라 산학협력단장이 임용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6조(설치) ① 스탠딩에그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 4. 9.)

② 위원장은 본부장으로 하고, 산학협력부단장, 기업지원센터장, 광고홍보학전공 책임교수, 프로젝트매니저는 당연직 위원이 되고, 다른 위원은 본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 10. 16., 2015. 2. 6., 2015. 10. 5., 2017. 5. 15., 2020. 4. 9.)

③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고, 다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스탠딩에그 운영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순이익의 처분과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스탠딩에그 관련 학과 및 학부의 현장실습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탠딩에그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

제4장 현장실습교육

제10조(현장실습 활용 및 학점인정)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현장실습학점 등의 인정)에 따라 스탠딩에그를 현장실습산업체로 인정한다.

② 관련학과(전공) 및 학부에서는 스탠딩에그를 학생의 현장실습과 교원의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

③ 현장실습 교과목과 학점 인정은 우리 대학교「인턴십 과목 운영 내규」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④ 그 밖에 현장실습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보상금 지급

제11조(보상금 지급) ① 스탠딩에그의 운영으로 발생한 순이익금 중 30% 범위 내에서 순이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직원 1인당 연간 보상금은 순이익의 10%를 넘을 수 없으며, 연간 보상금 총액이 교직원의 연간 보수총액을 넘을 수 없다.

③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되, 1인당 연간 등록금 총액을 넘을 수 없다.

④ 그 밖에 보상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장 재정

제12조(재정) 스탠딩에그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산학협력단 지원금
2. 학교기업의 계약 및 성과에 의한 수익금
3. 기부금
4. 이자수입 등 학교기업 관련 기타의 수익금

제13조(회계 및 감사) ① 스탠딩에그의 회계는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및 교육부장관 고시(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및 학교기업회계처리규칙)에 따른다.

② 감사는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제8조에 따른다.

제14조(예·결산과 사업계획) 본부장은 스탠딩에그의 예산 및 사업계획서와 결산 및 사업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16.)

제7장 기타

제15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대학교 및 산학협력단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보칙) 그 밖에 학교기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규정은 2015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규정은 2015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